정산 중빙 제출 자료 목록

1. 정산 중빙 제출 자료 목록

비목	세목	내역	증빙자료
			[공연제작지원비] 협회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,
			사업소특(3.3%)1) 공제 후, 지급
			(고유번호중 단체)
	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		□ 고유번호증 사본 1부
			□ 단체명의 통장 사본
			(사업자등록중 단체)_면세
			□ 협회와의 계약서 1부(양식 제공)
			□ 사업자등록중 사본 1부
		사업소득 사례비	□ 전자계산서(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)
			□ 단체명의 통장 사본
운영비	일반수용비		
			(사업자등록중 단체) <mark>_과세</mark>
			□ 협회와의 계약서 1부(양식 제공)
			□ 사업자등록중 사본 1부
			□ 전자세금계산서(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)
			□ 단체명의 통장 사본
			[출연진 사례비] 공연 출연진, 스태프 등 직접 투입
			인력, <u>사업소득(3.3%) 공제 후</u> 지급 필수
			□ 출연진 또는 스태프 계약서 1부(양식 제공)
			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²⁾
			□ 원천세 납부확인서 ³⁾
			□ 고용보험 중빙자료 ⁴⁾
			□ 사례비 지급내역 총괄표(양식 제공)
			□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

¹⁾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: 총 3.3%(원천징수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

^{2) 〈}별첨-1〉 참고

비목	세목	내역	증빙자료
			[단체 대표자=안무자의 경우]
			□ 안무비 사례비청구영수중(양식 제공)
			□ 사례비 지급내역 총괄표(양식 제공)
			□ 단체 통장 → 개인 통장(대표자)
			계좌이체확인증
			 [단체 대표자≒안무자의 경우]
		안무비	□ 단체와 안무자와의 계약서 1부
			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			□ 원천세 납부확인서
			□ 고용보험 중빙자료 ⁵⁾
			□ 사례비 지급내역 총괄표(양식 제공)
			□ 단체 통장 → 개인 통장(안무자)
			계좌이체확인증
			[의상비, 분장비, 현수막 제작비]
			□ 단체와의 계약서 1부(양식 제공)
운영비	일반수용비		□ 견적서 1부(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)
			□ 계좌이체확인중
			□ 성과물 사진 첨부
			□ 전자세금계산서이
			(업체가 <mark>사업자등록증(과세) 단체</mark> 일 경우에만)
			□ 전자계산서 ⁷⁾
			(업체가 <u>사업자등록증(면세) 단체</u> 일 경우에만)
		제작비	
			[음향, 조명, 무대기기]
			□ <u>기술지원계약서</u> 1부(양식 제공)
			□ 견적서 1부(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)
			□ 계좌이체확인증
			□ 성과물 사진 첨부(영상물은 USB로 우편 제출)
			□ 전자세금계산서 ⁸⁾
			(업체가 <mark>사업자등록증(과세) 단체</mark> 일 경우에만)
			□ 전자계산서 ⁹⁾
			(업체가 <u>사업자등록증(면세) 단체</u> 일 경우에만)

^{3) 〈}별첨-2〉 참고

^{4) 〈}별첨-4〉 참고 5) 〈별첨-4〉 참고

비목	세목	내역	중빙자료
운영비	일반수용비	용역비	□ 단체와의 용역계약서 1부(양식 협회에 문의) □ 견적서 1부(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) □ 계좌이체확인증 □ 용역결과물 혹은 용역결과보고서 (영상물은 USB로 우편 제출) □ 전자세금계산서 ¹⁰ (업체가 사업자등록증(과세) 단체일 경우에만) □ 전자계산서 ¹¹⁾ (업체가 사업자등록증(면세) 단체일 경우에만)

% Q&A %

- 공연제작지원금을 협회가 원천세 뗴고 입금해주었는데, <u>대표자(A)</u> <u>와 안무자(B)가 다를 경우</u> 단체가 안무비를 원천세 뗴고 안무자 (B)에게 지급하면, 이중과세 아닌가요?
- 이중과세 아닙니다.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『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』 제3장 제20조(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) ④항¹²⁾에 따라 본회는 <u>단체의 대표자(A)에게 원천세를 징수한 후</u>, 공연제작지원금을 지급하였으므로, 안무자(B)에게 안무비를 지급하기 전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은 안무자(B)의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이중과세가 아닙니다.
- 공연제작지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안 되나요?
- 국고보조금 현금 집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『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』 제3장 제22조(보조금 사용 방법) ①항¹³⁾에 따라 보조금 사용방식은 <u>입・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와 보</u>조사업비 카드사용만을 인정합니다.

⁶⁾ 구매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,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

⁷⁾ 구매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,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

⁸⁾ 구매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,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

⁹⁾ 구매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,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

¹⁰⁾ 구매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,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

¹¹⁾ 구매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,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

^{12) 〈}별첨-3〉 참고

^{13) 〈}별첨-3〉 참고

<별첨-1>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- 준비물 : 공인인증서

- 발급방법: ①국세청 홈택스 접속(www.hometax.go.kr) 후, 로그인

②상단 신고/납부 탭 클릭 후, 원천세 선택

③순서에 따라 기입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

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예시)

		0	신고구분			1]원천경	[[수이	혜상호	1A	고서	- (② 귀속	연월		년 월
매월	반	기 수	정 연말	소득 처분	환급 신청]원천2						③ 지급	연 월		년 월
		HOLI	H / AL & A				FU 77	TI / AH DH \		_		2	괄납부	여부	(j, 부
원천경	9수	법인	명(상호)				LII #	자(성명)				사업	자단위과	화세 여부		녀, 부
의무	자	사업:	자(주민)				11047	당 소재지					전화변	호		
			록번호				A mark	5 1414				2	건자우편	연주소		0
① 원	천징	수 명/	네 및 납	부세액										(단위: 원)		
							원	천 징 수 명	세					납	부세약	4
	-				소	= 2	지급		징 수세 약	H		9		10		10
	2	독자 소	= 7 2	코드	④ 인원		보면세 포함) 총지급액	⑥ 소득세 등	(A) +0	ł Č	⑧ 가산세	당월 : 환급서	액	소득세 등 (가산세 포함		농 어 촌 특 별 세
		7 H	기세액	A01			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	201 1000000		200						
			도퇴사	A02		+										
			용근로	A03		1										
	군록		합계	A04		\top										
	75-4	영말 정산	분납신청	A05												
		30	납부금액	A06												
			l감계	A10												
	퇴직		금계좌	A21												
	되실 소독		2 외	A22												
			1감계	A20		-										
캜	사업		월징수	A25 A26		-						-				
	사업 소독		발정산 남기	A26 A30		-							7			
것주 사 비거	_		금계좌	A41		+									-	
빌 			매월징수	A43		+					-				200	
	기탄	소독	연말정산	A44		-										
	소독	-	2 2	A42		_							- 6			
		7	IZ계	A40												
	Crt	연:	금계좌	A48												
	면금	공적연	연금(매월)	A45												
	솔		말정산	A46												
			l감계 -	A47												
		이자		A50		-							_		_	
	714	배당	스목 추진세액 등	A60 A69									-		-	
		비거주자 9		A70		_					-	-	-		-	
범인	_	· 외국법		A80		+							-			
e c		1 · 되독 신고(세		A90								-				
		합계		A99									-		-	
2 91		에 조				_								(단위: 원)		
9 2			급 세액의	계사			단월 반새	환급세액				1		ETI 297	1	
								00 7	밖의 환급	-	(B) 전대상	0	9	20		
⑫ 전 미환급	! 월 급세액	(3) 신	기 환급 청세액	(1월-18	면 (B) (E)	일반 급	(금융 회사 등)	상 상	합병 등	(6	조정대상 한급세액 9+(9+(9+	당월조 급세	정 환	차월이 1 환급세 9 (18-19	4	② 환급신청액
		-						회사등	-			-		-	-	
				. =								신고	너 부표	등 작성 D	부	
하며	. 위	징수의:	총분히	소득세법 검토하였	시행덩」 고 원천?	세18 당수의	5조제 1항에 리무자가 일	따라 위의 고 있는 A	네용을 제	일을	- 해당단에					M . H /
정확	하게	적었음	을 확인할	ruu. ^	-		Secretification and	STATE OF THE PARTY			부표(4~	54)	관급(7	쪽~9쪽)	공계	경세(10쪽
								년	월 9	21			세모	개리인		
								-	_			성 명	~11 7			
				신	고인			(서	명 또는 인)		자등록번	Φ.			
세물	백리인	민은 조 시	네전문자격	자로서 위	신고서	를성	실하고 공정	하게 작성	하였음을 3	확인	7.	현화번호		2 계지사그		
합니	ч.										※ 환급금액		이만인 등	흥우에만 책습	:니다.	
				세무대	리인			(서	명 또는 인)		예입처				
	세	무	서 장	귀ㅎ	F							예금종류				
			. 0	1,100							7	계좌번호				

<별첨-2> 원천세 납부확인서

1) 지로 납부 시

- 원천세 납부확인서 소득세(예시)

				70	서 (납세자	37	-			(1면
		납부번호			÷	입	서코드	76.7	CIHI G	国动态的
분류기호	납부년월	납부구분	세목	발행	선호 장수	일 관서	MITT	71.7	타번 호	受力
0126	15 07	4	14	73740)107 영덕	세무서	507	170189		provide a
상호 (성명)			주민/사	법자등록 !	변호		źDI S	크도	2015	
사업장 (주소)	경상북!				일반회계	기호	개정부소	2)		조세
년도/	기분		2015	년 여월	왼쪽의 금액을	한국은행	국고(수님)대리점	인 은행 또	=
체목	g	납투	무금액		우체국 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. (인터넷 등에 의한 전지납부 가능)					20.
근로소득	세(감)		9	22,440)	
교육/병	방위세			0		부기한 2015년 07월 10일				
놓어준!	특별세			0	가상계좌	농협은	연행 790-0227-8500)-18-8	유효기간
가신	금			0	(23:00 까지					2015년 07월 10일
Х			- 6	22,440	남부 가능합니다	1				(예약이체불가)
	034				S Pa	핻	년	S S	지점	수날인

- 원천세 납부확인서_지방소득세(예시)



2) 온라인 납부 시

- 원천세 납부확인서_소득세(예시)

성 상	명 호)				주 민 등 북 번 호 (사업자동록번호)
7-	4				
H	4				세목코드
# #	받자	V	-11	셑	수납점표
남 부	공 역				비고

- 원천세 납부확인서_지방소득세(예시)

	납투	후확인증	
납부자 정보	A	목	전자납부번호
제일지합	지방소득세		
납부기한	A	9	과세표준
2014.07.10	세목	금액	0
	본세 -		http://blog.naver.com/jjboxo
납부세액	도시계획세	0.84	과세대상

<별점-3> 『문화예술진퍙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』

1) 제20조 ④항

제20조(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)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관부서 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「감사원법」제25조에 따른 계산서,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통장을 사업 종료 후 5년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출연료, 연출료, 안무료, 강사료, 원고료,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및 시·군·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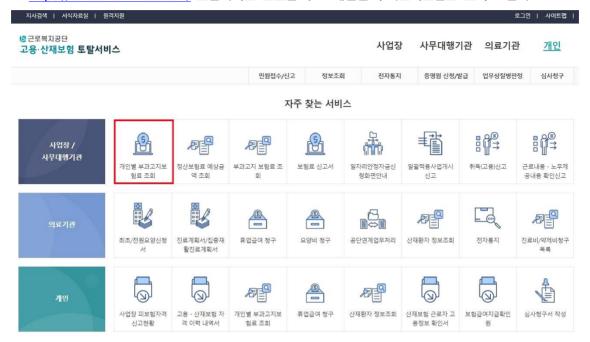
2) 제22조 ①항

제22조(보조금 사용 방법)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·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(지로를 포함한다)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(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) 사용만을 인정한다.

- ②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,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, 카드사용,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금액을 사전에 단체대표, 담당자 등이 먼저 집행한 후 그 금액만큼을 해당자에게 계좌이체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경우 현금지출 사유와 함께 집행내역 및 영수증을 해당 금액 이체영수증 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주관부서에서 현금 사용 집행내용을 검토한 후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.

<별첨-4> 『고용보험 납부내역 증빙자료』

- * 개인별 납부내역 조회
- 1. https://total.kcomwel.or.kr/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"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" 선택



2. 예술인 1명씩 선택 후 인쇄하기

(총 3쪽이 출력되는데 1~2쪽은 사업장 전체보수액, 3쪽이 해당예술인 보수액입니다.

3쪽만 예술인 개개인의 자료이므로 3쪽만 출력하여 제출 바랍니다.)

*출력물 샘플 첨부합니다.

샘플 자료 확인 후 고용보험 증빙 자료 제출 바랍니다.

고용보험·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

REPORT_NO 보험년도: 2021년도 출력일: 2021-07-02

출력자 : 제이지 : 1/3

사업장정보

관리번호	123-00-00000-0	사업자등록번호	000-00-00000	· 산재	성립일		업종	
사업장명	00000	대표자명	000	'신세	소멸일		요율	0/1000
사업장주소				7.9	성립일	2021-03-05	업종	
경감률	산재:0 임채:0	실급:0	고안직능: 0	고용	소멸일		요율	실급 : 14 고안직능 : 2.5

부과정보

		산재보험		
부과월	산재산정보수	임채산정보수	보험료	경감액
1월	0	0	0	0
2월	0	0	0	0
3월	0	0	0	0
4월	0	0	0	0
5월	0	0	0	0
6월	0	0	0	0
7월	0	0	0	0
8월	0	0	0	0
9월	0	0	0	0
10월	0	0	0	0
11월	0	0	0	0
12월	0	0	0	0
보험월 합계	0	0	0	0
정산	0	0	0	0
정산차액	0	0	0	0

			고용	· 보험			
부과월	실급산정보수	고직산정보수	근로자보험료	사업주보험료	경감액	근로자지원금	사업주지원금
1월	0	0	0	0	0		
2월	0	0	0	0	0		
3월	1,045,161	0	8,360	8,360	0	0	0
4월	1,200,000	0	9,600	9,600	0	0	0
5월	11,316,129	0	90,520	90,520	0	0	0
6월	11,200,000	0	89,600	89,600	0		
7월	0	0	0	0	0		
8월	0	0	0	0	0		
9월	0	0	0	0	0		
10월	0	0	0	0	0		
11월	0	0	0	0	0		
12월	0	0	0	0	0		
보험월 합계	24,761,290	0	198,080	198,080	0	0	0
퇴직정산	2,361,290	0	18,880	18,880	0		
정산	2,400,000	0	19,200	19,200	0	_	_
정산차액	38,710	0	320	320	0	_	_

※ 이 출력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에 의하여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.

[※] 고용보험 고용정보현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정보(단, 월평균보수 제외)임을 알려드립니다.

[※] 정산은 보수총액신고 및 퇴직정산 등에 의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나타냅니다.

^{▶※ 2012}년 7월 이전 보험료(2012년 이전 정산차액 포함)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되었으므로, 개인별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.

[※] 산출내역서의 보험료 표시는 해당월 적용받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합계 금액이 원단위 금액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^{▶※}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합니다.

[※] 고용보험 사업주보험료 = 실업급여 사업주보험료(근로자보험료제외)+고안직능 보험료

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(산재)

REPORT NO

출력일: 2021-07-02

페이지 : 2/3

근로자정보

출력자 :

_ , ,									
성명	000	생년월일	00-00-00	근로자구분	일반	고용일	고용종	전보일	

사업장정보

_	1 1 0 0 -										_
	관리번호	123-00-00000-0	사업장명	00000	대표자명	00	0				
I	사업장주소				요율	0/1000	산재 경감률	0	임채 경감률	0	Ī

부과정보

					ર્	재보험				
부과월	월평균보수	근무일수	산재산정보수역	액	임채신	·정보수액	보	험료	면제액	산재경감액

- ※ 이 줄력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에 의하여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.
- ※ 고용보험 고용정보현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정보(단, 월평균보수 제외)임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정산은 보수총액신고 등에 의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나타냅니다.
- ※ 2012년 7월 이전 보험료(2012년 이전 정산차액 포함)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되었으므로, 개인별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.
- ※ 산출내역서의 보험료 표시는 해당월 적용받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합계 금액이 원단위 금액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장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합니다.

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(고용)

REPORT_NO

출력일: 2021-07-02

출력자 :

페이지: 3/3

근로자정보

성명	000	생년월일	00-00-00	근로자구분	일반	고용일	2021-05-01	고용종료일	전보일	
0 0	000	0	00 00 00	, , _		- 0 L		1-00-6		

사업장정보

관리번호	000-00-00000-0	사업장명	*****	대표자명	***	
사업장주소			요율 실급 : 14 고안직능 : 2.5 실급 경감률	0 고안직능	경감률 0	

부과정보

	산정자료					고용보험 보험료					경감액		사회보험료지원금			
부과월	실업급여 산정보수액	고안직능 산정보수액	월평균보수	근무 일수	실업급	그로자 급여보험료	사업주 실업급여보험료		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	실업급 ^α 경감액	고안직능 경감액	근로자 실업급여지원금	사업주 실업급여지원금	사업주 고안직능지원금	지원율(%)	
1월																
2월																
3월																
4월																
5월	800,000	0	522,280	31		6,400		6,400	0		0	0	0	0		
6월	800,000	0	522,280	30		6,400		6,400	0		0)				
7월																
8월																
9월						Y		4								
10월																
11월																
12월																
보험월합계	1,600,000	0	1,044,560	61		12,800	1	2,800	0		0	0	0	0		
정산	1,600,000	0	1,044,560	61		12,800	1	2,800	0		0	0	0	0		
정산차액																

- ※ 이 출력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에 의하여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.
- ※ 고용보험 고용정보현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정보(단, 월평균보수 제외)임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정산은 보수총액신고 등에 의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나타냅니다.
- 迷 2012년 7월 이전 보험료(2012년 이전 정산차액 포함)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되었으므로, 개인별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.
- ※ 산출내역서의 보험료 표시는 해당월 적용받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합계 금액이 원단위 금액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합니다.